



##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 기준 개정내용 소개

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구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'98년 1월부터 산업계의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전기협회에서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, 정부에 개정(안)을 제출한 바 여기에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.

### 1. 개정대상 조사

상공자원부 고시 93-70호('93. 9. 3) 이후 산업계로부터 접수된 개정요청조항과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 및 '98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기술인협회,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전선협동조합 등 관련기관에 개정의견을 조사하여 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조항의 신설 등 112조항의 개정대상을 파악하였다.

### 2. 개정초안 작성

개정대상에 대하여 '98년 초부터 5월말까지 전기협회 자체검토결과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.

신 설	개 정	별 표	부 표
5조항	54조항	7조항	3조항

- 절연유의 구외유출방지 관련조항 개정
-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 관련조항 신설
- 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조항 신설
- 발전소 등의 울타리·담 등의 시설 관련조항
-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관련조항 신설
- 적용이 불합리한 34조항

### 3. 개정초안 검토

전기협회에서 작성한 개정초안에 대하여 '98년 6월부터 7월 15일까지 정부(산업자원부),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기술인협회,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전선협동조합 등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검토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.

개 정 안	한 전	안전공사	전력기술인 협회	전기공사 협회	전선조합
절연유 관련조항	수 용	부분이견	수 용	-	-
난연전선 관련조항	이 견	부분이견	수 용	-	수 용
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조항	일부이견	수 용	수 용	-	-
발전소 울타리·담 등 관련조항	일부이견	수 용	일부이견	-	-
의료실의 접지 관련 조항	수 용	수 용	수 용	-	-
적용이 불합리한 조항	부분이견	수 용	일부이견	-	-

## 4. 개정안 심의

### ○ 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위원회 구성

- 문유현전기설계사무소 : 대표 김택영(위원장)
- 정부(산업자원부) : 수화력발전과 강경성 사무관
- 한국전력공사 : 품질보증실 김진영 부장, 송변전처 이석진 부장
- 한국전기안전공사 : 사업관리처 검사부 김성근 부장
- 한국전력기술인협회 : 기술진흥실 김지경 실장
- 한국전기공사협회 : 기술개발부 임승학 부장
- 한국전력기술(주) : 기술기준사업본부 김정규 부장
- 대한전기협회 : 이우문 기술기준 연구위원
- 간사 : 대한전기협회 김한수 과장

### ○ 1차 심의

#### ① 심의안건

- 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위원회 규정(안)
- 전기협회에서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던 개정초안

신 설	개 정	별 표	부 표
5조항	54조항	7조항	3조항

#### ② 심의결과

- 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위원회 규정(안)은 부분수정 통과
- 기술기준 개정안은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인명 및 재산 보호, 화재진압에 꼭 필요한 설비/장소부터 접진적으로 적용도록 하였으며, 절연유의 구외유출방지 조항은 환경보전법 검토후 재심의하기로 하고, 케이블트레이공사 및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조항은 원안통과됨. 또한 발전소의 울타리·담 관련조항은 부분수정통과됨.

### ○ 2차 심의

#### ① 심의안건

- 제1차 위원회 심의시 보류개정안 보완사항

•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개정(안)에 대하여 전기협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전에서 요청한 적용이 불합리한 11조항,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한 적용이 불합리한 20조항 및 신설 11조항,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요청한 적용이 불합리한 12조항임.

#### ② 심의결과

- 1차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한 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개정안 일부 수정통과
- 한전에서 요청한 개정안은 지중전선로의 전력구내에 전화설비 시설 등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수정 통과하였으며, 안전공사 요청 개정안은 일부 수정후 통과하였고 기술인협회 요청개정안은 전기협회의 검토안과 같이 의결함.

### ○ 3차 심의

#### ① 심의안건

2회에 걸쳐 심의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추가로 검토·보완하여 작성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

- 기술기준 개정조항 : 56조항
- 기술기준 삭제조항 : 4조항
- 기술기준 신설조항 : 4조항
- 별표개정조항 : 4조항

#### ② 심의결과

원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발전소의 울타리·담 등의 시설(제50조)에 대한 접지방식, 제45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조항의 사용전압 관련사항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기로 함.

### ○ 4차 심의(서면심의)

#### ① 심의안건

- 기술기준 제45조 개정보완사항  
저압계통의 지락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

필요하여 이번 개정시에는 보류하고 심층검토 후 차후에 개정키로 함.

- 기술기준 제50조 개정보완사항  
토지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1조 및 제147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
- ② 심의결과 : 전기협회의 개정안과 같이 의결함.

## 5. 개정안 확정

### 가. 개정요지

전기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전기기자재의 개발 및 신공법의 보급에 따른 시공방법을 현실화하여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,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모호한 조항을 보완개정하였다.

- 전기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내용 보완 및 신설
- 모순점의 시정 및 미비점의 보완
- 신기술 및 신공법의 개발에 따른 사항 반영보완
- 용어, 문구, 부적절한 조항의 개선보완 등

### 나. 개정안 작성내용

#### (1) 작성내역

기술기준			별표
개정조항	삭제조항	신설조항	
55개조 (제174조, 제183조, 제280조, 제281조)	4개조 (제70조의 2, 제132조의 2, 제213조의 2, 제268조의 2)	4개조	4개조

#### (2) 개정안 주요내용

-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신설조항
  - 케이블트레이 공사  
케이블트레이 공사의 보편화에 따라 옥내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트레이의 강도, 재료, 시설방법, 케이블의 적재율 등을 표준화함.
  -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 
수술실내의 모든 금속체에 대하여 등전위 접지 시

공을 의무화하여 전위차 발생에 의한 환자의 감전 사고를 방지토록 함.

- H형 옥외 주상설비의 시설  
H형 옥외주상설비의 점검시 점검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신설함.
-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시 하중 등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기초는 착설 하중에 의하여 도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.

#### ○ 불합리 조항 및 판단이 모호한 조항 개정

- 발전소 등의 울타리 · 담 등의 시설  
울타리의 최소높이, 하단부와 지표면과의 간격, 고압 및 특고압전선로와 교차하는 금속제 울타리의 접지 등을 명문화하여 인축의 출입에 의한 전기사고를 방지함.
- 신설조항 및 삭제조항에 따른 문구 조정
- 정부조직의 개편 및 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모호한 조항 개선정비

#### ○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이 없는 조항 삭제

- 복합케이블을 사용한 통신선 관련조항 삭제
- 가공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중 보호망, 보호선은 시설 관련조항 삭제
-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안테나의 시설 관련조항 삭제

#### (3) 개정안 상세내역

- 제2조(용어정의)
  - 제22호의 복합케이블 정의 삭제(제174조의 삭제에 따른)
  - 제29호의 제어장치 정의 및 제30호 조상설비의 정의 신설
- 제4조(예외조치)
  - 용어변경(통상산업부장관 → 산업자원부장관)
- 제5조(인가신청)

- 용어변경(통상산업부장관, 직활시장 → 산업자원부장관, 광역시장)
- 제12조(고압케이블 및 특별고압 케이블)
  - 제1항 개정, 제3항을 삭제(제174조 삭제에 따른)
- 제14조(전선의 접속법)
  - 제1호의 '나'의 납땜방법 삭제
  - 제4호에 이종금속 도체 접속사항을 추가
- 제21조(접지공사의 종류)
  - 제1항을 제47조 제3호 및 제268조의 2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
- 제22조(각종 접지공사의 세목)
  - 제3항 제1호를 동결깊이를 감안, 접지극을 매설도록 개정
- 제27조(흔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)
  - 비접지식 저압전로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본조를 적용토록 개정
- 제32조(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)
  - 제2호 삭제(변압기의 시설용량은 전기사업자 자율에 의함)
- 제33조(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)
  - 제1항 제3호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
  - 제2항 삭제(에너지 절약의 보편화에 따른)
- 제34조(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)
  - 제1항 제1호 개정(제50조 개정에 따른)
- 제36조(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)
  - 제268조의 2 신설에 따라 등전위 접지를 제외함.
- 제40조(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)
  - 제1항 제1호 개정(제50조 개정에 따른)
- 제46조(피뢰기의 시설)
  - 제2항 제2호를 방출보호통 사용실적이 없으므로 삭제
- 제47조(피뢰기의 접지)
  - 사용실적이 없는 방출 보호통 삭제
- 제3호 및 제3호의 '가', '나', '다'를 신설하여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경우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곳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함.
- 제50조(발전소 등의 울타리 · 담 등의 시설)
  - 제2항 개정 및 제2항의 제1, 2호, 제4항을 신설하여 울타리 최소높이와 울타리 하단과 지표면과의 간격, 금속제 울타리의 접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방지
  - 제3항 제1호 오자 정정(제1항의→제2항의)
- 제60조(압축공기장치 등의 시설)
  - 제2항 제1호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최고사용압력의 1.25배의 수압으로 시험하는 방법을 인정
- 제70조의 2(H형 옥외주상설비의 시설)
  - H형 옥외주상설비 점검시 점검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신설
- 제72조(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)
  - 제4항의 제2, 3호를 제2호로 통합하여 조항을 정리
- 제73조(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)
  - 제1호의 강판조립주는 사용실적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
- 제78조(지선의 시방세목 등 및 지주의 대용)
  - 제1항 제2호를 지선은 반드시 연선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하고, 현행 제2, 3호를 '가', '나'로 하고 제4호에 내식성이 있는 것을 추가
- 제102조(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)
  -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제1호, 제2호에 예외조항을 신설
  - 제2호 삭제
- 제104조(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가)
  - 제6호 '다'를 신설하여 휴대전화용 안테나 등과 같

- 이 가공전선의 상부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를 고려, 시설방법을 규정.
- 제108조(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)
- 제1항 제1, 2호를 개정(1구내의 개념을 명확히 함)
- 제109조(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)
- 제1항 제1, 2, 3호의 1구내 개념을 명확히 하고, “π 분기인입”을 “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”으로 용어를 변경
- 제111조(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)
- 제1항 제1, 2호의 1구내의 개념을 명확히 함.
- 제118조(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 제한)
- 제1항 제3호의 강판조립주 삭제(제73조 제1호의 개정에 따름)
  - 제2항을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접한 지역을 정의 (내용 신설)하고 현행 제2호를 제3호로 함
- 제124조(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)
- 제1항을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횡단 보도교상의 높이를 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
  - 제3항 용어변경(“우마차” → “차량”)
- 제132조의 2(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 시 하중 등)
- 지지물의 도파 방지를 위해 신설
- 제134조(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)
- 제2항 제2, 3호 및 제4항에 이격거리 단서조항 신설, 케이블 사용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제2항 4호의 강판조립주 삭제
- 제139조(특별고압 보안공사)
- 제1항 제3호의 강판조립주 삭제(제73조 제1호의 개정에 따름)
- 제154조(지중전선의 폐복금속체의 접지)
-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의 발생이 거의 없으므로 관련내용을 제외
- 제156조(제목 변경)
- 내용에 맞게 변경(“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” → “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파의 접근 또는 교차”)
- 제164조(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)
-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 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
- 제168조(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)
- 제1항 제1, 2, 3호의 1구내 등을 명확화, 파이프 용어 변경
  -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전용 사프트 등을 지중전선로의 암거식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함.
- 제169조(임시 전선로의 시설)
- 제4항을 신설하고 제7항을 개정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2개월 내에 한하여 시설하는 케이블을 사용한 특별고압 지상전선로를 임시공사로 인정
- 제170조(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)
- 제3항을 신설하여 선로순시 및 사고 복구용 통신 전화설비를 구비토록 함.
- 제174조(복합케이블을 사용한 통신선의 시설)
- 복합케이블은 통신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
- 제175조(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)
- 제1항 제1호를 전선로의 주위감시용 무선용 안테나, 휴대전화용 안테나 등의 수직배선의 시설에 대응하여 통신선의 수직배선을 추가함.
- 제178조(가공통신 인입선의 시설)
- 제1항의 용어 변경(“우마차가” → “차량이”)
- 제181조(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)
- 제1항의 일부, 제3항 전부를 삭제(제174조의 삭제에 따름)
- 제183조(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안테나의 시설)
- 비현실적인 조항 삭제
- 제184조(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)

- 제183조 삭제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
- 제200조(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)
  - 400V 미만의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버스터트 공사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함.
- 제208조(버스터트공사)
  - 제1항의 제7호를 신설(제200조의 개정에 따름)
- 제213조의 2(케이블트레이공사)
  - 케이블트레이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기안전을 도모
- 제214조(메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)
  - 제2항 개정 및 제2항 제1호의 ‘아’ 신설, 제2호를 개정(제213조의 2 신설에 따름)
- 제215조(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)
  - 제2항, 제3항, 제3항의 제3, 제4호 개정, 제5호 신설(제213조의 2 신설에 따름)
- 제225조(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공사)
  - 제2항 제2호를 개정하여 절연재에 한하여 본 배선 공사를 허용함.
- 제226조(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 공사)
  - 제2항 제8호의 절연강화목의 사용실적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
- 제229조(고압 옥내배선의 시설)
  - 제213조의 2 신설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
- 제232조(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)
  - 제213조의 2 신설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
- 제268조의 2(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)
  - 의료기기의 전위차 발생에 의한 환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전위 접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
- 제279조(가공직류 전차선과 약전류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설비)
  - 제1호, 제1호의 ‘가’, ‘나’, ‘다’ 개정 및 ‘라’ 신설, 제2호 개정, 제2호의 ‘가’, ‘나’ 신설 및 제3호의 보호망 관련내용 삭제
- 제280조(보호망의 시설)
  - 제279조 개정에 따라 삭제
- 제281조(보호선의 시설)
  - 제279조 개정에 따라 삭제
- 제283조(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)
  - 강체조가식 가공직류 전차선을 기타에 포함하여 100m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.
- 제285조(전식방지를 위한 절연)
  - 용어변경(“비절연 부분” → “케조근접 부분”)
- 제286조(전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)
  - 용어변경(“비절연 부분” → “케조근접 부분”)
- 제287조(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)
  - 용어변경(“비절연 부분” → “케조근접 부분”)
- 제288조(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케조의 시설)
  - 용어변경(“비절연 부분” → “케조근접 부분”)
- 제292조(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)
  - 용어변경(“비절연 부분” → “케조근접 부분”)
- 제298조(흡상변압기 등의 시설)
  - 제50조의 개정내용 반영
- 별표7(고압케이블의 규격)
  - 제4항 삭제(제174조 삭제에 따름)
- 별표22(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규격)
  - 제1항 개정, 제2항 삭제(제73조 제1호 개정에 따름)
- 별표24(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허용응력)
  - 제1항 개정, 제2항 삭제(제73조 제1호의 개정에 따름)
- 별표35(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)
  - 제2항 삭제(제181조 제3항의 삭제에 따름)

## 6. 향후계획

확정된 개정안은 지난 ‘98년 10월에 정부(산업자원부)

에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'98년 12월중에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로 공포될 예정이다.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고시로 공포되어 산업계에 적용

케이블트레이공사의 시공관련조항, 병원 의료실의 접지시공의 의무화 등 신설조항 및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로 전기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.

### 전력산업기술기준 관련위원회 활동

#### □ 전력기준 관련위원회 개최

'98. 11월에는 전력기준 전문위원회 1회 및 9개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, 위원회별 주요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.

##### ○ 토목 전문위원회('98.11.26)

제2단계에서 개발한 토목구조 기술기준 중 원자력 강구조(SND), 일반철근콘크리트구조(SGB), 일반 강구조(SGC)의 개정안을 심의함.

##### ○ 시험 및 검사 분과위원회('98.11.11)

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초안 중 원전가동중시험(MO) 기술기준에 대한 초안을 검토함.

##### ○ 배관기기 분과위원회('98.11.12)

제2단계에서 개발된 벨브(MGG) 기술기준의 개정안을 검토함.

##### ○ 핵연료 분과위원회('98.11.13)

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초안 중 핵연료(NFA) 기술기준에 대한 초안을 검토함.

##### ○ 산업기기 분과위원회('98.11.17)

제3단계에서 개발하여 전문위원회 승인을 마친 공기조화기(MGF) 기술기준에 대하여 참조기준 추록('96년 Addenda)을 반영한 개정안을 검토함.

##### ○ 압력용기 분과위원회('98.11.19)

제2단계에서 개발된 저장탱크(MGD) 기술기준의 개정안을 검토함.

##### ○ 전기기기(2) 분과위원회('98.11.19)

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초안 중 고전압시험(NTA 4012) 외 11건 기술기준에 대한 초안을 검토함.

##### ○ 전선 및 선로용품 분과위원회('98.11.23)

제2단계에서 개발된 연동선(ECB 1100) 등 8건의 개정안과 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중 전선 및 케이블포장(ECB 6000) 기술기준에 대한 초안을 검토함.

##### ○ 보호 및 제어기기 분과위원회('98.11.25)

제2단계에서 개발된 저항온도감지기(EMB 1200) 등 13건의 개정안과 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중 원방감시제어 및 자동제어시스템(ETE 2200) 기술기준에 대한 산업계 검토의견의 반영분을 검토함.

##### ○ 재료 분과위원회('98.11.30)

제2단계에서 개발된 허용응력(MDP) 기술기준의 개정안과 제3단계 개발 전력기준 초안 중 배관부품용 탄소강단조품(MDF A105) 등 16건의 기술기준에 대한 초안을 검토함.

## 전력산업기술기준 질의 · 답변

1 해석서 번호 : MN-I-026

제 목 : 인증부호와 기기등급의 차이

승인일자 : '98. 11. 26

질의 : MNA 8211항의 명판 표시항목에는 인증부호(표 MNA 8100)와 기기등급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표 MNA 8100에 의하면 인증부호 안에 기기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 
이 경우 명판에는

- 1) 표 MNA 8100에 의한 인증부호만 표시하면 됩니까?
- 2) 아니면 인증부호에 추가하여 별도로 기기등급을 표시해야 합니까?

답변 : 1) 예, 명판에는 표 MNA 8100에 의한 인증부호만 표시하면 됩니다.

2) 아니오, 인증부호에 기기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기기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2 해석서 번호 : MN-I-027

제 목 : 재료의 식별

승인일자 : '98. 11. 26

질의 : MNC 2150항 재료의 식별 중 '압력 유지재료의 식별은 MNA 4344.6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'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1996년 추록 MNA 4344항은 구매문서관리의 부분이며 .6의 항목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재료 식별은 MNA 4350 '식별, 표시 및 재료의 관리' 부분을 적용하여야 되는지요?

답변 : 예, MNA '96년 추록을 발행하면서 조항이 변경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재료 식별은 MNA 4350을 적용하면 됩니다.

3

해석서 번호 : MN-I-028

제 목 : 4 in. 초과 볼트재료 및 봉재의 초음파탐상검사

승인일자 : '98. 11. 30

질의 : MNF 2584.1~2584.4 항은 4 in. 초과 볼트재료 및 봉재의 초음파탐상검사 관련 요건인  
지요?

답변 : 예, MNF 2584.1~2584.4 항은 4 in. 초과 볼트재료 및 봉재의 초음파탐상검사 관련 요  
건입니다. KEPIC '95년판의 MNF 2584 항은 편집상 누락된 것으로, 이 부분은 새로운  
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
### 2단계 전력산업기술기준 개정소개

— 전기분야 —

#### 1. 개정 배경

2단계 기술기준은 전력산업의 실질적인 기술자립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기술기준으로 자리잡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, 과학기술처 고시로 발행되었고, 울진 5 & 6호기 원자력 발전소에도 적용하게 되었다.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용 과정중에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며, 또한 비원자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단계 기술기준이 제정중에 있으므로 이와의 조화를 이루며, IEEE 등 주 참조한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

었다.

#### 2. 개정 방향

적용 과정중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, 주 참조한 외국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. 또한,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범용 규격인 ES, KS 등 일부 인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사항은 삭제하고, 외국 기술기준의 참조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WTO 체제 출범에

따른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한다.

### 3. 항목별 개정 경위 및 주요내용

제2단계 기술기준 중에 개정되는 기술기준의 주 참조 기준은 표 1과 같으며, 199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주 참조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단계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다.

#### 가. 원자력 전기

##### (1)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(ENB 2000)

NRC에서 적용을 승인한 IEEE 384-1974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IEEE 384-1992를 개정하였다.

#### 나. 전기기기

##### (1) 고압 및 저압 차단기(EED 1100/1200)

기준 2단계 결과물이 주로 KS와 IEC를 참조하고 있어 안정등급에 따른 검증 및 차단 용량 변경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변경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. 이에 따라 차단기 기술기준을 원자력용과 비원자력용으로 이원화시켜, 현재 제3단계 사업에서 개발중인 IEC에 따른 차단기를 비원자력용으로 하고, 제2단계 개정에서는 IEEE에 따라 제정하여 원자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

##### (2) 변압기(EEC 1000/2100/2200/3100/3200)

변압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주로 IEEE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, 전력산업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IEC와 ESB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. 그러나 현재 국내 전력 산업에서는 원자력은 주로 IEEE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비원자력은 주로 IEC를 참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야별로 각각 적용 가능하도록 IEC를 근간으로 한 ET(3단계 기술기준)와 IEEE를 근간으로 한 EEC로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이에 2단계 개정에서는 기 개발된 기술기준을 원자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

데 주안점을 두어 개정하고자 한다.

##### (3) 스위치기어 및 배전반(EEE 2000/3000)

주 참조한 IEEE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규정된 내용 중 IEEE와 불일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후 IEEE에 따라 개정하였다.

#### 다. 전선 및 선로용품

주 참조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# (1) 도체(ECB 1100/1200/1300/1400)

ECB 1200에서는 시험의 합격 판정기준이 추가되었고, ECB 1300에서는 시험 용액 준비 방법에 대하여 쉽게 다시 기술하였으며, ECB 1400에서는 기술 규격표에서 층간 역꼬임 압축 B급 및 단말 꼬임 압축 2종류 및 20°C에서의 직류 저항값이 추가되었다.

##### (2) 케이블(ECB 2600)

ECB 2600에서는 내오존 실리콘 고무의 도체 운전온도를 운전 조건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였고, 접지도체가 있는 금속 외장 케이블에 대한 도체 단면적 종류가 최대 500mm<sup>2</sup>까지 추가되었으며, 일부 케이블에 대한 직류 내전압 시험, 내방전 시험과 같은 시험항목이 추가되었다.

##### (3) 접속재(ECC 1100/1200)

ECC 1100은 용어의 정의 추가, 이온화 계수 시험 추가, 태양 광선의 영향 및 환경에의 노출 등 적용문제에 있어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다. 또한 ECC 1200은 용어의 정의 추가, 이온화 시험, 절연 내력 시험, 절연통 시험, 차폐시험 등이 보완되거나 추가되었다.

#### 라. 계측 및 제어 기기

주 참조 기준인 IEC 및 NEMA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저항온도 감지기(EMB 1200), 제어 계통용 금속 외함(EMC 3000), 제어 계통 시험 및 절차(EMC 1100) 및 전동기용 제어기(EMC 2000)이 개정되었다.

## 기술기준

### 〈2단계 개정 기술기준 목록〉

기술기준 번호	제목	2 단계 참조기준	개정 참조기준
EED 1100	고압 차단기	IEC 56-1987, ESB 150-1986 IEC 694-1981	ANSI/IEEE C37.04-1979 ANSI C37.06-1997, IEEE C37.09-1979
EED 1200	저압 차단기	IEC 947-2-1989, KS C 8325-1979	IEEE C37.13-1990, IEEE C37.16-1997 IEEE C37.50-1989
EEE 1000	전동기 제어반	UL 845-1988, NEMA ICS 2-1993, JEM 1195-1983	UL 845-1995
EEE 2000	저압 스위치기어	IEEE C37.20.1-1987, ESB 158	IEEE C37.20.1-1993
EEE 3000	고압 스위치기어	IEEE C37.20.2-1987, ESB 158	IEEE C37.20.2-1993
EEE 4000	분전반	NEMA PB1-1990, KSC 8320.	NEMA PB1-1995
EEG 1000	축전지	IEEE 450-1987	IEEE 450-1995
EEG 1100	납축전지 용량 계산 및 설치	IEEE 484-1996, IEEE 485-1983	IEEE 484-1996, IEEE 485-1997
EEH 1000	충전기	NEMA PE 5-1985, ESB 157	NEMA PE5-1996
EEK 1000	전식 방지 설비	NACE PR0169-1992	NACE PR0169-1996
ECB 1100	연동선	ASTM B 3-1990	ASTM B 3-1995
ECB 1200	주석도금 연동선	ASTM B 33-1991	ASTM B 33-1994
ECB 1300	납도금 연동선	ASTM B 189-1990	ASTM B 189-1995
ECB 1400	연동연선	ASTM B 8-1993	ASTM B 8-1995
ECB 2600	고무 절연 케이블	NEMA WC 3-1980	NEMA WC 3-1992
ECC 1100	고압 교류용 단말 접속재	IEEE 48-1990	IEEE 48-1996
ECC 1200	고압 케이블 접속재	IEEE 404-1986	IEEE 404-1993
ECD 1100	강제 전선관	ANSI C80.1-1990	ANSI C80.1-1994
EED 1100	고압 차단기	IEC 56-1987, ESB 150-1986 IEC 694-1981	ANSI/IEEE C37.04-1979 ANSI C37.06-1997, IEEE C37.09-1979
EED 1200	저압 차단기	IEC 947-2-1989, KS C 8325-1979	IEEE C37.13-1990, IEEE C37.16-1997 IEEE C37.50-1989
EEE 1000	전동기 제어반	UL 845-1988, NEMA ICS 2-1993, JEM 1195-1983	UL 845-1995
EEE 2000	저압 스위치기어	IEEE C37.20.1-1987, ESB 158	IEEE C37.20.1-1993
EEE 3000	고압 스위치기어	IEEE C37.20.2-1987, ESB 158	IEEE C37.20.2-1993
EEE 4000	분전반	NEMA PB1-1990, KSC 8320.	NEMA PB1-1995
EEG 1000	축전지	IEEE 450-1987	IEEE 450-1995
EEG 1100	납축전지 용량 계산 및 설치	IEEE 484-1996, IEEE 485-1983	IEEE 484-1996, IEEE 485-1997
EEH 1000	충전기	NEMA PE 5-1985, ESB 157	NEMA PE5-1996
EEK 1000	전식 방지 설비	NACE PR0169-1992	NACE PR0169-1996
ECB 1100	연동선	ASTM B 3-1990	ASTM B 3-1995
ECB 1200	주석도금 연동선	ASTM B 33-1991	ASTM B 33-1994
ECB 1300	납도금 연동선	ASTM B 189-1990	ASTM B 189-1995
ECB 1400	연동연선	ASTM B 8-1993	ASTM B 8-1995
ECB 2600	고무 절연 케이블	NEMA WC 3-1980	NEMA WC 3-1992
ECC 1100	고압 교류용 단말 접속재	IEEE 48-1990	IEEE 48-1996
ECC 1200	고압 케이블 접속재	IEEE 404-1986	IEEE 404-1993
ECD 1100	강제 전선관	ANSI C80.1-1990	ANSI C80.1-1994